

창원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536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5360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가단1090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박세영

변론 종결 2022. 6. 16.

판결 선고 2022. 7. 21.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가단109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8. 10.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10. 24. 접수 제946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2쪽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10.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F, 자녀 G, H, I, D 및
피고가 있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김해시 J 답 2,406㎡이 있었다. 상속인들은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0.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1행의 "1," 다음에 "2,"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2/13)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6 내지 11, 18,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등 망인의 공동상속인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기여분이 있을 뿐, D에게는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① 피고는 망인의 장남으로, 망인 소유의 주택(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서 20년 이상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 망인이 운영하던 정미소 일을 거들거나,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고, 망인과 어머니를 부양하거나 간병하였으며, 동생들을 돌보았다.
- ② 피고는 망인의 명의로 등기된 농지인 김해시 J 답 2,406m²의 취득 과정에서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③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위와 같은 피고의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부양과 망인 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를 특별히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④ 다른 공동상속인(G, H, I)은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망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는 기여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김해시 K 토지와 건물을 피고의 소유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⑤ 피고는 2006. 3.경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까지 D에게 수십 차례 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의 송금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D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돈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피고의 망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수인의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협의된 나름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앞서 본 다른 공동상속인의 의사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득관

판사윤정

판사이큰가람

별지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김해시 J 답 2,406m²'에 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